

제안설명서

- 일 시 : 2021. 11. 25.(목)
- 장 소 :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
- 안 건 :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 (의안번호 제2883호)

행 정 국

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.

존경하는 **이현찬** 위원장님, **채유미·한기영** 부위원장님.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의안번호 제2883호 「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개정안은

- 자치구의 행정환경 및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과 측정단위를 조정하고,
- 지방재정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조례 제8조에서 3년마다 기준재정수요를 현실에 맞게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, 올해 2월에서 10월까지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학술용역을 추진했습니다.

자치구의 최근 행정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출된 학술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, 개선된 산정방식으로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고, 보다 합리적으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합니다.

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

-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기초생활비의 기존 측정단위인 '기초생활수급자수'에 '차상위계층'을 포함하여 '저소득취약계층'으로 개선하였고,
- 보육사업비의 측정단위인 '영유아수'에 '공공보육시설정원'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,
- 교육지원비의 측정단위인 '학생수'에 '특수학교 학생수'를 추가하여 수치산정기준을 보완하였으며,
-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'특별조정교부금'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서울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.

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11. 25.

행정국장 김 상 한